Yeosu
Web Contents

2024년 04월 29일 06시 45분

목차

목차 2
등록현황 3
문화의 집 시설사용 허가 취소 3

문화의 집 시설사용 허가 취소

2014.04.17 조회수 724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0-0007
담당부서	문화예술과
상위법령	문화예술진흥법
조례	여수시 문화의 집 관리·운영 조례 제10조
유형	2호 -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등록사유	문화공보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03-02-17
규제시행/폐지일	2003-02-17
규제내용	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 1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될 때 3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.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목록

이전글 전라남도 여수시-2010-0006

다음글 전라남도 여수시-2010-0008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